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1

제출연월일 : 2025. 10. 2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심의를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 삭제

: 안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1) (기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개정) ①, ③, ④, ⑤, ⑦ 삭제

나.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를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 : 안 제5조제2항

1) (기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정)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다. 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6항 → 제5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8. 28. ~ 2025. 9.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290호, 기획예산과-13474(2025. 8. 28.)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3289(2025. 8. 25.)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3289(2025. 8. 25.)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2003(2025. 8. 28.)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5475(2025. 10. 1.)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16298(2025. 10. 20.)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삭 제>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생 략)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⑦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두 기
연락처	(033) 330 - 2220